금강대학교 학칙

제 정 2002. 6. 24. 개 정 2003. 1. 28. 개 정 2003. 9. 1. 개 정 2004. 6. 15. 개 정 2004. 10. 6. 개 정 2005. 6. 28. 개 정 2007. 11. 1. 개 정 2009. 3. 1. 개 정 2009. 9. 1. 개 정 2011. 4. 26. 개 정 2011. 6. 1. 개 정 2012. 1. 1. 개 정 2012. 1. 16. 개 정 2012. 9. 1. 2013. 1. 1. 개 정 개 정 2013. 6. 1. 개 정 2014. 4. 15. 개 정 2015. 1. 19. 개 정 2015. 4. 30. 개 정 2015. 8. 1. 개 정 2016. 3. 31. 개 정 2016. 6. 17. 개 정 2016. 12. 1. 개 정 2017. 6. 20. 개 정 2018. 5. 1. 개 2019. 4. 8. 정 개 정 2020. 2. 17. 개 정 2020. 6. 15. 개 정 2021. 4. 28. 개 정 2021. 8. 20. 개 정 2022. 3. 31. 개 정 2022. 4. 29. 개 2022. 12. 27. 정 개 정 2023. 5. 04. 개 정 2024. 1. 12. 개 정 2024. 6. 2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불교정신과 천태종의 중창 이념을 구현하고자 설립한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및 목적) ①자아완성, 국가와 사회에 봉사, 세계인류 평화에 이바지함을 교육목 적으로 한다.
 - ②자신의 참 성품을 찾아 사회를 선도·봉사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보활용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안목과 열정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며 뛰어난 외국어 실력

과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의 1(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조직

- **제3조(조직)** ①본교에 프라마나학부(仁問과학학부), 일반대학원, 로터스칼리지를 둔다. 〈개정 2020.02.17., 2022.04.29., 2023.05.04.〉
- **제4조(교직원)** ①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둔다. 〈신설 2020.02.17.〉
 - ②제1항의 교원 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02.17.>
 - ③교원은 대학(원), 학부(전공), 또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부설교육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02.17.〉
 - ④본교의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부설교육기관, 사무조직에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02.17.〉
 - ⑤본교의 각 대학, 대학원, 학부, 로터스칼리지에 장을, 전공에 전공주임교수를 각각 둘 수 있다. 〈신설 2020.02.17.〉
 - ⑥교직원의 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17.〉
- **제5조(대학)** ①본교에 프라마나학부(仁問과학학부), 로터스칼리지를 둔다. 〈개정 2020.02.17., 2022.04.29., 2023.05.04.〉
 - ②프라마나학부(仁問과학학부)에는 프라마나전공을 두고 로터스칼리지에는 교양교육과정과학생전문 커리어 전공(불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을 둔다.<개정 2022.04.29., 2023.05.04.>
 - ③본교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2.17., 2023.05.04.>
 - ④ 삭제 <개정 2020.02.17.>
- **제6조(행정조직)** ①본교에 교학지원처, 전략혁신처, 경영관리처를 둔다. 〈신설 2020.02.17., 개정 2022.04.29.〉
 - ②기타 행정조직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17.〉
-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①본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20.02.17.〉
 - 1. 산학협력단
 - 2. 신문방송사
 - 3. 인권센터
 - 4. 사회봉사센터
 - ② 본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 1. 원각도서관
 - 2. 기숙사
 - ③ 본교에 다음의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 1. 국제교류센터

- 2. 평생교육원
- ④ 본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원(소)를 둔다.
- 1. 불교문화연구소
- 2. 공공정책연구워
- ⑤부속기관, 부속시설,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소(원)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⑥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 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원각도서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다.

제3장 학사일반

- 제8조(수업연한) ①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자의 경우 수업 연한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 ②학·석사통합과정은 6년(12학기)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에서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0.02.17.〉
- 제9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10조(학년·학기)** ①본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02.17.> 다만, 타 대학·기관 학점인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 정 2024.1.12.>
 - ②매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누며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에 따라 2주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 일을 조정할 수 있다.
 -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 3. 계절학기 : 여름학기, 겨울학기
- 제11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 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②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매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7.〉
- **제12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개교기념 일로(11월 7일) 하고,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 ②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 ③총장은 비상재해 등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재입학

- 제13조(입학시기, 입학허가 및 취소) ①입학시기는 매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7.>
 -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적상태(합격, 입학허가, 재학, 휴학, 제적, 졸업)와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2.17.〉

-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입학허가의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4(입학허가의 취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4.28.〉
-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개정 2021.04.28.>
- **제14조(입학자격)** 학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20.02.17.>
 -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0.02.17.〉
 -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개정 2020.02.17.〉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신설 2020.02.17.〉
 - 4.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신설 2020.02.17.〉
- 제15조(입학절차) 입학절차는 모집시에 공고한다.
- **제16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 ②입학전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 **제17조(일반편입학·학사편입학)** ①본교는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을 실시한다. 〈개정 2020.02.17.〉
 - ②일반편입학의 경우 제3학년에 일반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관계법이 정한 기준의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 ③학사편입학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학사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 ④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⑤일반편입학 및 학사편입학 요건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⑥대학원의 석·박사과정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8조(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제적시 학부, 전공(학과)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적시 학부, 전공(학과)이 통합 또는 명칭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또는 명칭변경된 학부, 전공(학과)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02.17.</p>
 - ②재입학 신청자에 대하여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입학을 최종 승인한다. <개정 2021.04.28., 2022.12.27.>
 - ③제55조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④제31조 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한 자가 다시 동 31조 6호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7.>

- ⑤재입학자의 종전 성적경고 및 휴학 횟수는 재입학시점 이후부터 재산정한다.
- ⑥재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 ⑦재입학자는 재입학 학년의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재입학자는 신청에 따라서 최초 입학학년도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신설 2024.6.20〉

제5장 전과(삭제) <개정 2022.12.27.>

제19조(전과) ① 삭제 〈개정 2022.12.27.〉

- ② 삭제 <개정 2022.12.27.>
- ③ 삭제 <개정 2022.12.27.>
- ④ 삭제 <개정 2020.06.15., 2022.12.27.>
- ⑤ 삭제 <개정 2022.12.27.>

제20조(학부 및 학과변경자의 교육과정이수) 삭제 〈개정 2022.12.27.〉

제6장 등록·수강신청

- 제21조(납부고지)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등록기일 이전에 공고한다.
- 제22조(입학생의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재학생의 등록) ①재학 중인 자는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의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수료생은 예외로 한다.
 - ②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단, 학사학위 취득 유예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0.02.17.〉
 - ③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 시 대학교 장학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등 록금 납부 통보를 받은 1주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7.〉
- 제24조(분할납부 방법) ①등록금은 학기별로 징수하되,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에 신청한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7.>
 - ②단, 계절학기 수강생 및 당해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02.17.>
 - ③분할납부 기간 및 비율은 다음 표의 원칙에 따른다. <신설 2020.02.17.※개정 2022.12.27.》

분납차수	등록금액	납부시기				
	2회 분납	1학기	2학기			
1회	등록금의 50%	2월	8월			
2회	등록금의 50%	3월	9월			

④학사과정 학생은 제8조 1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7.〉

학점	등록금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6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1/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⑤학사학위 취득 유예자가 강의 수강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7.〉

학점	등록금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1/6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1/3

- 제25조(등록금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며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장학금 부분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다만,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0.02.17.>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단,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업료의 5/6 해당액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 제26조(수강신청) ①재학 중인 자는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제7장 휴학·복학·자퇴·제적

- 제27조(휴학) ①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이하 "육아휴학"이라 한다.),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4.28.>
 - ②재학 중인 자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3/4 이내에 휴학신청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2022.12.27.〉
 - ③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④일반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법정전염병, 정신병질환을 가진 자는 동조 2항 및 3항에 불구하고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28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며 통산기간에 대하여는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입대휴학, 육아휴학(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8세 이하 자녀 양육시),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때 육아휴학과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은 1년의 범위에서 휴학할 수 있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학과 장기인턴십휴학은 관련 증빙서류를, 창업휴학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해당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7.〉
 - ②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 제29조(복학) 복학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중에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복학기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2021.04.28.>
- **제30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2.17., 2022.12.27.>
- 제31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
 - 1. 매학기 지정된 기일 내에 휴학의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2. 분할납부의 대상자 중 잔여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 3. 등록을 완료 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02.17.>
 - 4. 다른 학교의 학적을 가진 자 <개정 2023.05.04.>
 - 5.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02.17.〉
 - 6.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 7. 6호에 의거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신설 2020.02.17.〉
 - 8. 재학(또는 휴학) 중인 자가 사망 시 〈개정 2020.02.17.〉
 - 9. 삭제 <개정 2020.06.15.>
 - 10.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2.17.〉
 - 11.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신설 2020.02.17.〉

제8장 교과·학점·수업·졸업

- **제32조(교육과정)**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으로 구성하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2022.12.27.>
- 제33조(교육과정 편성·이수) ①프라마나전공 교육과정은 선한마음, 인간, 종교/역사, 정치/경제, 문화/예술, 교육/복지, 과학/기술, 공생, 공헌 9대 영역과 교양과정(금강PRIDE 등)으로 편성한다.<개정 2022.12.27., 2023.05.04.>
 - ②복수전공 교육과정은 학생선택형 커리어개발과정으로 해당 학문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2.12.27.>
 - ③삭제 <개정 2020.06.15., 2022.12.27.>
 - ④일반선택과목의 이수는 타 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교과목으로 하되, 이수 학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12.27.>
 - ⑤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사회수요,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측정 결과,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02.17.>
 - ⑥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 제34조(학점 및 수업) 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0.06.15.〉

- ②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수업시간의 단위는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6.15.>
- ③1학점의 이수는 1학기당 이론 또는 실험·실습·실기를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의 강의로 한다. 다만, 제11조에 의한 수업일수 감축 시에는 감축된 해당 시간만큼 제외한다. 〈개정 2020.06.15.〉
- ④기타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과 정규 교과목 이외에 어학시험, 특별과정 등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특별히 인정되는 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2020.06.15.>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04.28.〉
- ⑥ 학점 및 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21.08.20.〉
- 제35조(학기당 이수학점) 재학 중인 자의 최대 이수학점은 21학점으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4.20 이상인 자는 최대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4.6.20>
- 제36조(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①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②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③재입학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2.17.〉
- 제37조(타 대학·기관 학점인정) 재학 중인 자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다른 대학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다만, 학생교류 및 학점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대학의 경우는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02.17.〉
- 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17.〉
- 제39조(학위과정의 통합)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석 사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17.〉
- 제40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로 필요한 교과목 구분별 학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 **제41조(학년수료)** ①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등록학기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년	등록학기	취득학점
1학년	2개 학기	졸업학점의 1/4
2학년	4개 학기	졸업학점의 2/4
3학년	6개 학기	졸업학점의 3/4
4학년	8개 학기	졸업학점의 4/4

- ※ 취득학점은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적용
- ②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하며 별지서식 (3)의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 제42조(졸업자격) ①졸업자격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 ② 삭제 <개정 2020.02.17.>
- 제43조(졸업과 학위) ①졸업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 2의 학위에 의하여 별

- 지서식(1)의 국문 및 영문학위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2.04.29.>
- ②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수료 후 학위수 여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 ③졸업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2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취득 유예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 ④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협정에 따라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 ⑤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복수전공・자율설계융합전공<개정 2022.12.27., 2023.05.04.>

제44조(전공선택) ①삭제〈신설 2020.02.17., 개정 2022.12.27.〉

②삭제 〈신설 2020.02.17., 개정 2022.12.27.〉

- 제45조(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 본인 소속 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 이외에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수전공 및 자율설계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2022.12.27., 2023.05.04.〉 1. 복수전공: 학생이 소속한 전공 이외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신설 2020.02.17., 개정
 - 1. 폭구선당: 약생이 소득한 선당 이외의 선당과정을 이누하는 선당 〈선절 2020.02.17., 개선 2022.12.27.〉
 - 2. 삭제 〈신설 2020.02.17., 개정 2022.12.27.〉
 - 3. 자율설계융합전공: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전공(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만 선택 가능) <신설 2023.05.04.>

제10장 시험·성적

- **제46조(시험)** ①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에세이 또는 서술형 평가를 실시한다. 〈개 정 2020.02.17.. 개정 2022.12.27.〉
 - ②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시험 개시일 이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소속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02.17.〉
- 제47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에세이 또는 서술형평가, 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022.12.27. 개정>
 - 1. 프라마나학부(仁問과학학부) 전공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출석 20점 이내, 에세이(서술형평가) 40점 이내, 참여도 등 60점 이내에서 평가한다. 이외의 전공 및 교양은 출석 20점 이내, 중간 및 기말시험 60점 이내, 과제 등 40점 이내에서 평가한다.
 - 2.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한 자는 기타 성적에 관계없이 F등급을 부여한다.
 - 3. 실험실습,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4학년 조기취업(창업)자의 경우 출석인정은 증빙서류 제출 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에세이 또는 서술형평가 등을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다. 조기취업(창업)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6.15., 개정 2022.12.27.※개정 2024.6.20〉
- 제48조(성적등급) ①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등급	평점	백분위 점수	등급	평점	백분위 점수
A+	4.5	95~100	C+	2.5	75~79
A0	4.0	90~94	C0	2.0	70~74
B+	3.5	85~89	D+	1.5	65~69
В0	3.0	80~84	D0	1.0	60~64
			F	0.0	0~59

- ②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은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경우 취득학점에만 포함되고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된다.
- **제49조(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0 이상 또는 합격(P)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22.12.27.>
- 제50조(재이수) ①모든 교과목은 취득 성적이 C+ ~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재이수는 3과목 이하로 제한한다. 단 졸업인증교과목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 다만, 재이수 성적이 과락(F)일 경우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제51조(성적평점평균의 계산) ①과목별 성적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 수와 성적 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②성적 평점평균의 계산은 학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③순위계산은 취득학점 수가 다르고 성적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 ④성적등급에 P와 N으로 표시되는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성적 평점평균 및 순위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52조(예비성적경고 및 성적경고) ①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2.20 미만인 학생은 예비 성적 경고한다. <개정 2022.12.27.>
 - ②매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90 미만인 학생은 성적경고 한다. 〈개정 2022.12.27.〉
 - ③성적경고자는 다음 학기 개시 후 담당 튜터들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12주 이내에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미이수시 다음 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02.17., 2022.12.27.>

제11장 포상과 징계

- 제53조(포상) 재적자 중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54조(우등생)** ①학기 성적이 다음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기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1. 18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 평점평균이 3.70 이상인 자<개정 2022.12.27.>
 - 2. 17학점 이수자로 성적 평점평균이 3.90 이상인 자<개정 2022.12.27.>
 - 3. 15학점 내지 16학점 이수자로 성적 평점평균이 4.10 이상인 자<개정 2022.12.27.>
 - ②졸업대상자로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등생으로 하고 학적부 및 학위증서에 기재한다.
 - 1. 성적평점평균이 4.20 이상인 자: 최우등생<개정 2022.12.27.>
 - 2. 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인 자: 우등생<개정 2022.12.27.>
- 제55조(장계) ①총장은 재적자가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 ②장계는 근신, 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징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관련 부서장의 사건경위서 작성 후 해당위원회 상정<개정 2022.12.27.>
- 2. 해당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의견 청취<개정 2022.12.27.>
- 3. 해당위원회 심의
-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장 장학금

제56조(장학금) ①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장 위탁생·외국인 등

- 제57조(위탁생) ①정부 각 부처 재직자로서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학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 ②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되, 지정된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8조(장애인·외국인 등) ①장애학생에게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한다.
 - ②외국인으로서 제4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9조(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학칙을 준용하다.

제14장 공개강좌

- 제60조(공개강좌) ①본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02.17.>
 - ②공개강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장 교원의 교수시간

- 제61조(교원의 교수시간) ①본교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제11조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원의 책임시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 ②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02.17.>

제16장 교수회

- **제62조(구성)** ①본교에 전체교수회를 둔다. <개정 2020.02.17., 2022.12.27.>
 - ②전체교수회는 본교 일반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2.17., 2022.12.27.>
- 제63조(의장 및 회의) ①전체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된다.〈개정 2022.12.27.〉
 - ②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전체교수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2.27.>

- ③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4조(심의사항)** 전체교수회 또는 학부교수회의는 학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 교무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에 발의할 수 있다.
 - 1.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5. 전공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장 교무위원회

- 제65조(구성) ①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 정 2020.02.17.>
 -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부처장, 학부장, 도서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직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2.17., 2020.06.15., 2022.12.27.>
- 제66조(회의) ①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교무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7조(심의사항) ①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전면개정 2022. 11. 28.〉
 - 1.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2. 본교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 3.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장 위원회

제68조(위원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장 대학원

제69조(대학원 학칙) 본교 일반대학원 학칙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2.17.>

제20장 학생활동

- 제70조(학생단체) 학생은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신장하여 스스로를 계발하고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하여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제71조(학생생활지도) 학생의 학업 및 생활지도는 해당 학부의 교원이 분담한다.
- 제72조(금지활동) 학생은 수업·연구 등 대학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기타 교육목 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 제73조(행사의 신고) 학생단체가 교내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지정된 양식에 의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4조(간행물) 학생단체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칙 개정·공포

- 제75조(학칙의 개정)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신구대비표로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7일간 사전공고하고 의견수렴 후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사안에따라 법인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며, 본조는 대학(대학원포함)의 모든 학칙, 학칙과 관련한 시행세칙, 학사내규에 적용한다.
- 제76조(학칙의 공포) 학칙의 개정 공포는 규정관리 부서에서 관계 서류(교무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에 추가된 전공에 관하여는 2005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이 개정학칙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소속은 다음과 같이 한다.

불교문화학부 및 사회과학부 입학생: 불교/복지학부

통역학부 입학생: 통상/행정학부

나. 2005학년도 사회과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학칙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통상/행정학부내 통 상통역학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편입·재입학)부터 적용한다.

- 1. (시행일)이 개정학칙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조항은 2010년 3월 1일 기준 2학년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하다.

부 칙

-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개정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조항은 2010년 3월 1일 기준 2학년이하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개정학칙중 제3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1항, 제40조 1항에 관하여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삭제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학부변경)
 - 1) 불교/복지학부는 불교학부와 사회과학부로 분리한다.
 - 2) 통상/행정학부는 경영학부와 글로벌인재학부로 분리한다.
 - 나. (명칭변경 및 학과신설)
 - 1) 불교학전공은 불교학과로,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학과로, 행정학전공은 행정학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 2) 통상통역학(영어, 중국어, 일본어)전공은 국제통상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로 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한다.
 - 3) 응용불교학과와 회계학과를 신설한다.
 - 4) 이 학칙개정 이전의 통상/행정학부의 통상통역학(영어, 중국어, 일본어)전공은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 다. (학과소속변경) 삭제
 - 라.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학과소속변경 등 경과조치)
 - 1) 이 학칙개정 이전에 불교/복지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통상/행정학부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2) 이 학칙개정 이전에 통상통역학(영어, 중국어, 일본어)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재적을 유지하되 학적변동으로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은 학년에 재적하게 될 경우 이수학기 기준으로 4학기 이내에서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 3) 이 학칙개정 이전에 수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가 전공선택을 해야 할 경우 종교단체장 추천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불교학과 또는 응용불교학과를, 사회봉사자전형으로입학한 자는 사회복지학과를, 교과성적우수자 및 어학특기자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으로입학한 자는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중 1개 학과를, 정시전형으로입학한 자는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 중 1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학과에 같은 학년학생이 재적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한다.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학부, 학과 폐지 및 변경, 통합, 신설)
 - 1) 이 학칙개정 이전의 글로벌인재학부 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어통번역학과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 후 폐지한다.
 - 2)불교학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를 각각 불교/사회복지학학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로 변경한다.
 - 3)경영학부 국제통상학과는 국제통상통역학과로 명칭 변경하여, 경영학부 회계학과, 사회과학부 행정학과와 함께 글로벌경영/행정학부로 통합한다.
 - 4)교양학부는 신설한다.
- 나. (학부, 학과 폐지 및 변경, 통합에 따른 학과소속 변경 등 경과조치)
 - 1) 이 학칙개정 이전에 불교학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불교/사회복지학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2) 이 학칙개정 이전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불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글로벌경영/행정학부 행정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이 학칙개정 이전에 경영학부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글로벌경 영/행정학부 국제통상통역학과, 회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4) 이 학칙개정 이전에 글로벌인재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재적을 유지하되 학적변동으로 같은 학년에 재적하게 될 경우 이수학기 기준으로 5학기 이내에서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통상통역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5학기에 학적을 변경하는 재적생에 한하여 1학기 이내에서 졸업유예자가 있는 경우 등록금은 장학금 지급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0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2. (경과조치)
- 가. (학부, 학과 폐지 및 변경, 통합, 신설)
 - 1) 이 학칙개정 이전의 교양학부는 폐지한다.
 - 2) 불교/사회복지학부 소속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를 각각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으로 변경한다.
 - 3) 불교/사회복지학부 소속 사회복지학과, 글로벌경영/행정학부 소속 행정학과를 각각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 행정학전공으로 변경하고, 동 학부에 경영학전공을 신설한다.
 - 4) 글로벌경영/행정학부 소속 국제통상통역학과 및 회계학과는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 5) 국제통상학부를 신설하여 FTA시장전공, 중국통상전공, 미국통상전공, 일본통상전공을 둔다.
 - 6) 정보과학부를 신설하여 컴퓨터과학전공을 둔다.
- 나. (학부, 학과 폐지 및 변경, 통합에 따른 학과소속 변경 등 경과조치)
 - 1) 이 학칙개정 이전에 불교/사회복지학부 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각각 불교문화학부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2) 이 학칙개정 이전에 글로벌경영/행정학부 행정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이 학칙개정 이전에 글로벌경영/행정학부 국제통상통역학과 및 회계학과 소속 학생은 불교문화학부, 사회과학부, 국제통상학부 소속 전공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재적변경 후 같은 학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학부 및 전공 통합, 폐지 및 신설)
 - 1) 이 학칙개정 이전의 사회과학부, 국제통상학부, 정보과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글로벌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학부 및 전공소속 변경 등 경과조치)
 - 1)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사회과학부, 국제통상학부 정보과학부 소속 학과, 전공 학생은 글로벌융합학부 소속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종전 학과 또는 전공은 변경하지 않은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 후 폐지한다.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학칙 개정 중 제24조, 제28조
- 6, 제45조, 제47조에 관하여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제42조 ②항의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학부, 학과, 전공 폐지 및 변경, 통합, 신설)
 - 1) 이 학칙 개정 이전의 글로벌교양학부는 폐지한다.
 - 2) 불교문화학부를 불교인문학부로 변경한다. 불교문화학부 소속 불교학전공과 응용불교 학전공을 통합하여 불교학전공으로 한다.(단, 응용불교학전공의 소속 학생이 재적을 유지 하고자 할 경우 졸업 할 때까지 존속한다.)
 - 3) 글로벌융합학부 소속 IT경영학전공은 공공정책학부 경영학 전공으로 변경한다.
 - 4) 글로벌융합학부 소속 IT소프트웨어 전공과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 중국, 일본) 전공은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 나. (학부, 학과, 전공폐지 및 변경, 통합에 따른 소속 변경 등 경과조치)
 - 1) 이 학칙 개정 이전에 불교문화학부 소속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불교인문학부 불교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응용불교학전공 학생이 재적

- 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 2) 이 학칙 개정 이전에 글로벌융합학부 소속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IT경영학전공에 재적 중인 학생은 각각 공공정책학부 행정학전공과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글로벌융합학부 소속 IT소프트웨어 전공, 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 중국, 일본) 전공 학생은 불교인문학부, 공공정책학부 소속 전공으로 재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재적변경 후 같은 학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개정학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31조 9호의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3. (경과조치) 제34조 ①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4. (경과조치) 제47조 ②항은 원격수업 운영지침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29조(복학), 제34조(학점 및 수업)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제19조(전과), 제44조(전공선택)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전공선택(변경)의 기회를 제공한다.<개정 2023.05.04.>
- 3. 삭제<개정 2023.05.04.>
- 4. (경과조치) 제48조(성적등급)은 기존 재학생 및 졸업생까지 소급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학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개정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 호						
	=1					
	<u>o</u> t	위	승			
		성	명 :			
		생	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이 다	학교가 정한	()학부 ()전공을	Ī
이수하고 ()학사	나의 자격을 얻	었으므로	이를 증명	하며 0	비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금 강	대 학 교	총 장	(학위)		인	
학위번호 : 금강대 (흑	<u> </u>					

제 3	호 호										
			<u> </u>	<u></u>	위		증				
				1	,,		0				
						성	명 :				
						생년	월일 :	년	월	일	
c	의 시라	0 NI F	배학교가	저하 (,	하다 /		\저 :	고 al	
(ll 즉 뽀기								이수하
고 (수여함.		나와 ()학/	사의 자극	격을	얻었	으므로	이를	증명하며	0	증서를
1 01											
					ا	1	월 (일			
		금 강	대 학	교	총	장	(학위)		인		
<u>학위번:</u>	호 : 금경	<u> </u>	탈)	_							

No.:

GEUM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Upon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of Geumgang University has conferred the degree of

BACHELOR OF ARTS

in

영문/전공명_International Trade & Interpretation(English)
upon

영문/이름 (HONG, GILDONG)

who has honorably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university for that degree

학위수여일자 (Feb. 27. 2024)

[총장영문명] **(Ph.D.)**

PRESIDENT OF THE UNIVERSITY

제 호				
•				
증	서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가 정한 ()하보 () 저고으
게 자답한 의 대학교기 정반 (747 (7位百百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증서를 수여힘	1-			
	1 •			
ម៉	<u> </u>	월 일		
금 강 대 학 교 총	자	(하이)		ol
日 70 H 号 亚 - 8	Ö	(91)		인

제	<u> ই</u>			
	증 서			
	성 명:			
		ъ	월	이제
		ĩ.	包	큰 '0'
	위 사람은 이 대학교가 정한 ()학부 ()전공	<u>.</u>
제	학년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증서를 수여힘	}.		
	년 월 일			
	그기미친그 초기		ما	
	금 강 대 학 교 총 장 (학위)		인	

학 생 정 원<개정 2024.6.20>

		학 생 정 원									
	2003	2004	2005	2006	2012	2015	2016	2017	2019	2020	2023
학 부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전 공 별	(전 공 별	(전공별	(전모집	(학과별	(학과별	(학부별	(학부별	(학부별	(학부별	(학부별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불교문화학부	20	20	20								
(불교학전공)	(20)	(20)	(20)								
통역학부	60	60	60								
(영어통역전공)	(20)	(20)	(20)								
(일어통역전공)	(20)	(20)	(20)								
(중어통역전공)	(20)	(20)	(20)								
사회과학부	20	20	20								
(사회복지학전공)	(20)	(20)	(10)								
(국제정보학전공)			(10)								
불교/복지학부											
(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100							
통상/행정학부				100							
(통상통역학전공 :											
영어, 일어, 중어)											
(행정학전공) 불교학부											
<u>돌</u> 교역구 (불교학과)					1.0						
(<u>동</u> 윤불교학과)					13 12						
(88일파 락파) 사회과학부					12						
(행정학과)					O.F.						
(사회복지학과)					25						
(시외국시학과) 경영학부					20						
(국제통상학과)					20						
(국제등 8 국과) (회계학과)					20						
(최기학의) 글로벌인재학부					20						
(영어통번역학과)					20						
(중국어통번역학과)					18						
(일본어통번역학과)					17						
불교/사회복지학부					1/						
(불교학과)						10					
(응용불교학과)						10					
(사회복지학과)						10					
글로벌경영/행정학부						25					
(국제통상통역학과)						ΛF					
(회계학과)						45					
(최 [/] 미국의) (행정학과)						25 30					
교양학부						30					
불교문화학부							20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											
(응용물교 약신 공) 사회과학부							2-				
시커피워구							65				

		학 생 정 원									
	2003	2004	2005	2006	2012	2015	2016	2017	2019	2020	2023
학 부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학년도
	(전공별	(전공별	(전공별	(전모집	(학과별	(학과별	(학부별	(학부별	(학부별	(학부별	(학부별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정원)
(경영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국제통상학부							40				
(FTA시장전공)											
(중국통상전공)											
(미국통상전공)											
(일 본통 상전공)											
정보과학부							20				
(컴퓨터과학전공)								0.0	4.5		
불교문화학부								20	15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											
글로벌융합학부								125	95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IT경영학(경영학,											
IT소프트웨어)전공)											
(글로벌지역통상학											
(미국, 중국 .일본)											
전공)											
불교인문학부										15	
(불교학전공)											
공공정책학부										95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전공)											
프라마나학부(仁問											110
과학학부)											
(프라마나전공)											
로터스칼리지											
(불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계	100	100	100	100	165	145	145	145	110	110	110

학 위 종 별 표<개정 2024.6.20>

학위구분	학위종별	해 당 학 부(전공/학과)
학사학위	문 학 사	불교/복지학부(불교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통상통역학사	통상/행정학부(통상통역학전공 :영어, 일어, 중어)
	행정학사	통상/행정학부(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과)
	문 학 사	불교학부(불교학과, 응용불교학과),
	통번역학사	글로벌인재학부(영어통번역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일본 어통번역학과)
	행정학사	사회과학부(행정학과)
	경영학사	경영학부(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문학사	불교문화학부(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
	경영학사	사회과학부(경영학전공)
	행정학사	사회과학부(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전공)
	국제통상학사	국제통상학부(FTA시장전공, 중국통상전공, 국통상전공, 일본통상전공)
	이학사	정보과학부(컴퓨터과학전공)
	IT경영학사	글로벌융합학부(IT경영학(경영학, IT소프트웨어)전공)
	행정학사	글로벌융합학부(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사	글로벌융합학부(사회복지학전공)
	글로벌지역통상(미국,중국,일본)학사	글로벌융합학부(글로벌지역통상학(미국,중국,일본)전공)
	IT소프트웨어학사	글로벌융합학부[IT경영학(IT소프트웨어)전공]
	IT경영학사	글로벌융합학부(IT경영학(IT경영)전공)
	자율설계융합학사	자율설계융합전공에 따른 융합학사학위
	문학사	불교인문학부(불교학전공)
	행정학사	공공정책학부(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사	공공정책학부(사회복지학전공)
	경영학사	공공정책학부(경영학전공)
	인문교양학사	프라마나학부(仁問과학학부)(프라마나전공)
	문학사	로터스칼리지(불교학전공)
	행정학사	로터스칼리지(행정학전공)
	경영학사	로터스칼리지(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사	로터스칼리지(사회복지학전공)